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561879		
등록번호	134811-0319279		
상 호	주식회사 뷰노코리아 (VUNO Korea, Inc.)		
	주식회사 뷰노 (VUNO Inc.)		2017.04.28 변경 2017.05.19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층 702-14호(논현동, 751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층 703호(논현동, 751빌딩)		2016.02.26 변경 2016.02.26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17, 2층(논현동, 정진빌딩)		2016.08.08 변경 2016.08.22 등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07, 6층(반포동, 신태양빌딩)		2017.08.04 변경 2017.08.17 등기
공고방법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vuno.co)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2018.12.17 변경 2018.12.28 등기
1주의 금액	금 1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 주		
	50,000,000 주		2018.12.17 변경 2018.12.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5,000 주		
보통주식	20,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 주	금 2,5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7,318 주		2016.08.18 변경 2016.08.26 등기
보통주식	21,318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6,000 주	금 2,731,8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4,818 주		2016.09.10 변경 2016.09.20 등기
보통주식	21,318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6,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2	7,500 주	금 3,481,8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4,865 주		2017.05.12 변경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9년11월12일 15시02분58초

등기번호	561879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21,318 주	금 3,486,500 원	2017.07.12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6,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2	7,547 주		
발행주식의 총수	36,125 주	금 3,612,500 원	2018.09.17 변경
보통주식	22,578 주		2018.09.18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6,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2	7,547 주		
발행주식의 총수	39,815 주		
보통주식	26,268 주	금 3,981,500 원	2018.09.21 변경
상환전환우선주식	6,000 주		2018.10.05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2	7,547 주		
발행주식의 총수	40,503 주		
보통주식	26,268 주	금 4,050,300 원	2018.09.22 변경
상환전환우선주식	6,000 주		2018.10.05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2	8,235 주		
발행주식의 총수	44,419 주		
보통주식	26,268 주	금 4,441,900 원	2018.11.15 변경
상환전환우선주식	6,000 주		2018.11.29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2	12,151 주		
발행주식의 총수	44,419 주		
보통주식	44,419 주	금 4,441,900 원	2018.12.19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8,883,800 주	금 888,380,000 원	2018.12.28 등기
보통주식	8,883,800 주		2019.03.28 변경
			2019.04.11 등기

목적			
1. 이미지 및 텍스트 인식을 활용한 검색 및 추천 서비스			
1.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2018.12.17 변경		2018.12.28 등기>
1. 인터넷, 인트라넷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업			
1. 인공지능 기반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서비스업	<2018.12.17 변경		2018.12.28 등기>
1.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1. 인터넷 마케팅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1.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및 시설업			
1.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 및 공급업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사업			
1. 모바일 비즈니스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8.12.17 삭제		2018.12.28 등기>
1.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2018.12.17 추가		2018.12.28 등기>
1. 의료기기 제조, 임대 및 도소매업	<2019.08.14 변경		2019.08.23 등기>
1. 신약 개발업	<2018.12.17 추가		2018.12.28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9년11월12일 15시02분58초

등기번호	561879
------	--------

1. 부동산업 및 부동산임대업	<2018.12.17 추가	2018.12.28	등기>
1.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2018.12.17 추가	2018.12.28	등기>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8.12.17 변경	2018.12.28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이예하 780126-*****			
2014년 12월 10일	취임	2014년 12월 10일	등기
2017년 12월 10일	중임	2018년 09월 18일	등기
대표이사 이예하 780126-*****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61번길 10, 101동 202호(반월동, 신영통현대 아파트)			
2014년 12월 10일	취임	2014년 12월 10일	등기
대표이사 이예하 780126-*****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61번길 10, 111동 206호(반월동, 신영통현대 아파트)			
2016년 04월 18일	주소변경	2017년 08월 17일	등기
2017년 12월 10일	중임	2018년 09월 18일	등기
사내이사 김현준 770417-*****			
2014년 12월 10일	취임	2014년 12월 10일	등기
2017년 12월 10일	중임	2018년 09월 18일	등기
사내이사 정규환 810815-*****			
2017년 04월 28일	취임	2017년 05월 19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강석훈 740523-*****			
2017년 04월 28일	취임	2017년 05월 19일	등기
2018년 12월 17일	사임	2018년 12월 28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인직 790219-*****			
2017년 04월 28일	취임	2017년 05월 19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손민수 700806-*****			
2018년 12월 17일	취임	2018년 12월 28일	등기
2019년 03월 29일	사임	2019년 04월 11일	등기
사내이사 이상진 790922-*****			
2019년 03월 29일	취임	2019년 04월 11일	등기
감사 박삼철 601023-*****			
2019년 03월 29일	취임	2019년 04월 11일	등기
사외이사 정희교 581010-*****			
2019년 08월 14일	취임	2019년 08월 23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조 (의결권)~~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제2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1.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 분배할 잔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하 "청산분배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우선분배액: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의 합계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561879

~~나. 참가분배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를 행하고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보통
주식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시켜 분배한다(다만 가.호에 따라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우선적으
로 분배한 재산은 미리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고 보통주주가 지분율에 따른
재산을 분배 받기 전까지 우선주식의 주주는 재산분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최대로 발행되었을 수량
의 전환 신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8년 12월 19일 말소 2018년 12월 28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다. 본 항의 목적상 회사의 해산사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 ~~(1)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i) 그 직전에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된 경우, (ii) 회사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iii)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 ~~(2)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현물출자, 실시권 설정 및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
- ~~(3) 회사의 신규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의 발행, 회사나 주주가 보유하는 기존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의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단, 본 항의 목적상 경영권 이전이라 함은 주식의 인수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거래의 결과 회사 발행의 주식총수(단, 전환주식과 주식연계증권의 경우는 당해 거래(복수의 순차 거래가 결합된 경우에는 최종 거래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 또는 증권에 관한 전환권, 인수권 또는 교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의 재직 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가 있는 때~~
- ~~(4) 기타 법률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

~~2.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의 지분율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주식으로 한다.~~

~~2018년 12월 19일 말소 2018년 12월 28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제3조 (상환청구권)~~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항의 상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환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2.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후 삼(3)년이 되는 날부터로 한다. 단, 제2조 제1항 다.호에서 정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즉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i)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및 (ii)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부더 상환기일까지 발행가액에 대하여 상환청구일 당시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등기번호

561879

~~액의 합산액에서 상환기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하여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은 상환에 앞서 상환가액과는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

~~4.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이하 “상환청구서”라 한다)로써 한다. 상환청구서에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상환사유,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또는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하 “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로부터 해당 주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2018년 12월 19일 말소 2018년 12월 28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제4조 (전환권)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본 조의 목적상 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보통주식을 “전환신주”라 한다.~~

~~2.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최소한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청구서에는 전환의 의사, 전환청구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주권에 기재될 주주의 성명 및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주권을 그 전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또는 그가 지명한 자에게 신속하게 교부한다.~~

~~3. 전환의 효력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발생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은 그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동액으로 하며, 최초의 전환비율은 1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제5항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된 전환가액은 후속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다. 또한, 전환비율은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에 반비례하여 상향 조정된다.~~

2018년 12월 19일 말소 2018년 12월 28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5. 전환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정된다.~~

~~가.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특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주식의 수량은 본건 우선주식 1주에 (본 조 제5항의 전환비율에 의해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량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취득한 가격) /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의 산식에 의한 비율을 반영해 산정된 보통주식의 수량으로 하기로 한다.~~

~~나. 본 항 가 호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의 일주당 취득가격 산정에서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일주당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 수 * 직전 전환가액) + (추가주식수 * 추가주식의 발행가액)]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 수 + 추가주식 수)~~

~~다. 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상장을 하는 경우 주당 공모가격의 70%가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당 공모가격의 70%로 조정된다.~~

등기번호

561879

~~라. 본 항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또는 재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 또는 재조정을 행하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 조정 또는 재조정의 원인사실과 결과를 자세히 기재한 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2018년 12월 19일 말소 2018년 12월 28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2~~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 다음날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1 특별상환권(기한 전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5조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권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09월 10일 설정 2016년 09월 20일 등기~~

~~2018년 12월 19일 말소 2018년 12월 28일 등기~~

등기번호

561879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2019년 08월 14일 설치 2019년 08월 23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 직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 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8년 12월 17일 변경 2018년 12월 28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정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2)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2)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2018년 12월 17일 변경 2018년 12월 28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561879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18 년 12 월 17 일 변경 2018 년 12 월 28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정관 제14조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 제14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정관 제14조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 이상 재임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 제14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2017 년 04 월 28 일 변경 2017 년 05 월 19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8 년 12 월 17 일 변경 2018 년 12 월 28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